

부산시민 문화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2020. 8. 3. 월. 14:00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진행 순서

14:00 ~ 14:10 : 인 사 말 - 김배경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장)

14:10 ~ 14:20 : 경과보고 - 오재환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14:20 ~ 14:35 : 기조발언 - '왜 우리에게 [부산시민 문화현장]이 필요한가?'

- 남송우 (부산시민문화현장 제정 추진위원장)
(인본사회연구소 소장)

14:35 ~ 15:20 : 종합토론 - 좌장 오재환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정서원 (부산청년위원회 위원장)

최학림 (부산일보 선임기자)

황정미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대표)

15:20 ~ 15:50 : 열린토론 - 참석자 전원

「부산시민 문화헌장(안)」

문화는 우리 삶의 토대이며, 윤택한 일상의 조건이다. 그래서 문화의 향유는 시민의 필수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

부산은 지형적으로 한반도의 산맥을 따라 강이 흐르고, 강이 끝나면서 바다와 만나 열린 해양세계로 나아가는 곳이다. 근대 이전부터 동북아시아 해양교류의 출발지였고, 한국 근대화의 물꼬를 튼 도시이다. 어느 지역보다 안과 밖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부산문화의 정체성은 한국전쟁 때 바다가 강을 품듯 갈 곳 없는 피란민을 포용하는 힘이 되었다. 또한 금정산의 기세와 가마솥의 열기로 일어난 부마항쟁은 한국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

패총과 고분에서 출토된 찬란한 유물은 부산문화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근대 이후 영화에 대한 시민의 애정과 지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시켰으며, 부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영화창의도시의 영예를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수행했던 조선통신사도 역사적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인류평화의 이념을 드높이 실현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개방과 환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부산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질적 문화들이 창의적으로 소통하는 문화의 교류 지대로 발전해 가야 한다. 그리고 문화분권을 통해 부산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적인 미래상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시민들의 문화주권을 오롯이 확립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문화적 가치들을 존중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2020년 0월 0일에 이 헌장 전문과 14개의 조문을 공표한다.

1. **(시민문화권 보장)**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받아야 한다.

2. **(문화적 토대가 되는 인문정신의 진흥)** 공동체를 지탱하는 문화 가치는 사람과 생명의 존중, 상생과 환대의 정신, 타자에 대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관용, 공공선의 추구, 자연과의 상생이다. 시민공동체의 신뢰, 협력, 유대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할 수 있는 인문정신을 진흥해야 한다.

3. **(문화다양성의 존중)** 문화다양성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토대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초이다. 시민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문화를 창출하며,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평화와 공존의 세계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4.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 문화예술의 창조는 문화 진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의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이 창조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5. **(미래세대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과 환경조성)**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시민 단체, 교육청, 대학, 문화예술인 단체와 소통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은 문화예술교육에 있다. 그러므로 연령이나 지역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인과 이주민도 부산지역에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8. **(문화자산의 보존)** 부산지역 선인들의 경험과 역원이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는 인류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문화자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새로운 창조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부산의 자연환경도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향유해야 할 문화자산이기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해야 한다.
9. **(예술과 학문의 자유)** 예술과 학문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며 지역사회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역량의 토대이다. 시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예술창조와 학문 활동에 참여하고, 사상, 표현, 탐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룩한 창조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10. **(경제발전과 문화의 조화)** 문화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근원적 힘이다. 경제발전과 사회번영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문화 발전의 지속적 동력이 되어야 한다.
11. **(문화산업의 지원과 균형)** 문화산업은 산업활동이자 시민의 정신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화적 활동이다. 문화산업은 시장논리와 문화적 가치 사이의 균형 속에서 시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문화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시장 경쟁력의 열세에 놓여 있는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12. **(문화의 사회적 가치)** 부산은 사회적 고립, 고령화, 도시공동화, 해양환경오염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가 지닌 가치와 정신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화적 힘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13. (부산시의 책무)

1) 문화권리 보장

부산시는 이 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산시는 공공의 문화기반시설을 부단히 확충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체계를 강화하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생활환경과 활동공간을 개선하고, 법률과 제도에도 문화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2) 문화활동과 교육 지원

부산시는 시민과 민간단체가 펼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활동력이 부산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능력의 기초이며, 행복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제휴협치의 원칙

부산시는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환영하고 존중해야 하며,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시민 문화예술단체와 적극적으로 제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문화의 지역편중과 격차 해소

부산시는 부산지역 내에서 문화향유의 기회가 시민들에게 균등하고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지원해야 하고, 지역의 문화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4. (실행의 약속과 평가) 부산시는 이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이의 실행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이 헌장이 천명하는 문화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추진경과

오재환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①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20. 1. 1.)

- (제5조) 시장은 이 조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규범인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해야 한다.

② 「부산시민 문화헌장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20. 2월)

- 구성 : 시민대표 및 각 분야 전문가 (16명) ▶ 각 분야 대표 추천
 - 예술·시민단체, 청년문화활동가, 언론사, 시의회·교육청 등 관계기관
- 주요역할 : 문화헌장 작성·검토 ▶ 구성, 문화헌장 작성 방향, 시민의견 수렴 등

③ 문화헌장 제정 추진 위원회 활동 ('20. 2~6월중, 총 9회 개최)

1. 제1차(2.25) : 본 회의 ▶ 제정배경, 추진방향, 국내외 사례 공유
2. 제2차(4.17) : 본 회의 ▶ 방향성, 구체성, 실천력 확보 등 가치 공유
3. 제3차(4.27) : 소위원회 ▶ 문화헌장 초안(v1) 공유, 의견제출
4. 제4차(5.12) : 소위원회 ▶ 문화헌장 초안(v2) 합동교정
5. 제5차(5.13) : 소위원회 ▶ 문화헌장 초안(v3) 합동교정
6. 제6차(5.19) : 본 회의 ▶ 문화헌장 초안(v4) 합동교정, 활용방안 논의
7. 제7차(5.26) : 소위원회 ▶ 문화헌장 초안(v5) 합동교정
8. 제8차(6. 9) : 위원장·간사회의 ▶ 문화헌장 초안(v6) 전문 일부축약
9. 제9차(6.30) : 본 회의 ▶ 문화헌장 초안(v7) 검토·승인 홍보·활용방안 토의

④ 제1차 시민의견 수렴 ('20. 7. 13. ~ 7. 24)

- 수렴방법 : 온라인(시, 문화재단, 16개 구·군 홈페이지), 우편
- 수렴내용 : 부산시민 문화헌장(v8) 내용 전반
 -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가치, 문장, 단어), 기타 제안

부산시민 문화헌장 제정 추진위원회

【 (구성) '20. 2. 21. (운영) 2~6월중 총 9회 】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市 문화정책고문	(사)인본사회연구소	이 사 장	남송우	위원장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실 장	오재환	간사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시 의 원	김혜린	소위원회
문화예술단체	부산예총	부산영화인협회장	서영조	
	부산민예총	정책위원장(이사)	이광국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 터 장	안재홍	
시민단체	참여연대	운영위원	박찬형	
	경실련	사무국장	도한영	
청년문화가	리앤컬처 주식회사	대 표	이동휘	
	예술은공유다	대 표	심문섭	
대 학 교	부산대학교(국어국문학과)	교 수	김경연	소위원회
	동아대학교(한국어문학부)	교 수	허 정	소위원회
언 론 사	부산일보(문화부)	기 자	조영미	소위원회
	국제신문(문화부)	기 자	권용휘	
부산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 학 관	원미경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국 장	김배경	당연직

[기조발언]

왜 우리에게 [부산시민 문화헌장] 이 필요한가?

남송우 (부산시민문화헌장 제정 추진위원장, 부경대 명예교수)

1. 말문을 열면서

"문화적 권리"란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인권개념이다. "문화적 권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도 공론화되지 않고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문화적 권리" 이전에 우리에게 더 시급한 인권의 실현이 요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관심이 이처럼 낮은 것은 국내에 국한되는 상황만도 아니었다. 20세기가 지날 때까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낮았다.

1996년에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에 대한 유럽특별조사단(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이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 제출한 「주변에서 안으로」(In from the Margins)라는 보고서가 "문화적 권리"는 논의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은 인권범주로서 그에 대한 만족스런 정의와 법률적 규약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었을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고 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정세적 이유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문화적 권리의 문제는 다른 권리, 특히 정치적·경제적 권리에 비해 공론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서냉전 구도 속에서 "문화적 권리"는 "경제발전"이라는 더 큰 화두 속에 묻혀 논의의 싹이 생성될 환경이 되지 못했다. 대립하는 두 체제가 서로 우위를 주장할 근거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의 성공 여부였다. 정치적 관심과

논쟁은 경제적 우열을 놓고 생길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 권리를 범주화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였다. 사실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¹⁾, 어떤 기준으로 문화와 문화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하는지 그 범위를 제대로 정리하기란 매우 어렵다. 문화적 권리를 다른 권리와 구분하는 기준이 될 문화 자체의 개념 정의가 이처럼 규정하기 어렵다면 문화적 권리를 논의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문화적 권리를 사회적 쟁점으로 제시하기도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설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문화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 소위 문화의 세기로 21세기가 명명되면서, 문화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지니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1) 문화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인 정의는 1871년 타일러가 『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 즉 문명이란, 민족연 구라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지식, 신앙, 예술, 도덕들, 법률, 관습, 그리고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과 습관들의 복합적 총체이다”에서 시작된다. 이후 다양하게 정의된 문화의 정의를 통합하기 위한 연구가 크뢰버.클릭혼의 『Culture :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1952)와 볼드윈.폴 크너.린즈러리의 『Redefining Culture : Perspectives Across the Disciplines』(2006)에서 시도되었다. 전자는 1871년에서 1952년 사이에 주로 영어권에서 110명의 저자가 쓴 책에서 수집한 166개의 Culture에 대한 정의를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각의 그룹 말미에서 각 그룹에 속하는 정의들에 대해 세밀하게 논평하는 과정을 거쳐 문화에 대한 단 하나의 엄밀한 정의를 모색해 보려고 했으나, 대신에 문화의 중심의 미(central meaning)라는 정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내린 문화의 중심의미는 다음과 같다

“문화는, 명시적인 그리고 암시적인, 습득된 행동의 그리고 그 행동을 위한, 상징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인간 집단들의 두드러진 업적을 구성하고 있는, 인공물에서의 구현을 포함하고 있는 패턴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통적인(즉 역사적으로 도출되고 선택된) 관념들, 그리고 특히 그들의 덧붙여진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체계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행동의 산물로, 다른 한편으로는 뒤따른 행동의 조건을 이루는 요소로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하나의 명쾌한 정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그 동안의 정의들을 모두 모아서 짜깁기한 것일 뿐 정교한 정의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후자는 전자의 연구가 있던 후 195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현한 문화에 대한 정의 313개를 수집하여 문화에 대하여 단 하나의 불변의 정의를 찾는 작업을 시도했다. 정의를 모색하기 위해 긴 문장으로 정의된 313개를 806개의 세부요소로 나누어 분류하고, 이를 다시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그룹은 다시 더 작은 27개의 하위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분류한 그 분류들의 존재이유와 그것의 하위분류 및 그 속의 정의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화들 자체(말하자면, 우리가 주어진 문화를 보고 이해하는 방식)와 문화에 대한 개념은 빠르게 변화하며 유동적이며 두서없이 산만하다 어떤 문맥이든 집어넣어서 의미가 성립하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정의는 없다”

그래서 이들 역시 “우리는 단 하나의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를 통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 문화는, 너무나 풍부하고도 다양한 정의들과 대단히 섬세하고 민감한 의미로 인하여 총체적 파악도 어렵고 하나의 변수로 다루기도 어렵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어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 힘든 상황이다.

박종환, 「문화의 정의 -하나의 통합적 정의를 찾기 위한 두 번의 거대한 도전」, 『중국어문학논집』76, 2012, p.455, p.460, p.462, p.464 참조

2. 바이마르 헌법에 나타나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 공화국의 헌법으로, 명칭은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 의회에서 헌법이 제정된 데서 유래한다. 바이마르 헌법은 19세기적인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 국가의 이념을 가미한 특색 있는 헌법으로,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 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의 첫 민주주의 헌법으로서, 독일 국민의 통일을 이념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의무성과 재산권 행사의 적합성 등을 인정하였다. 내용은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와 연방주의 권한을 규정한 부분, 국가의 권한과 조직 체계를 정한 부분,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을 다룬 부분이다. 혈통이 단일한 독일국민은 국가를 자유롭게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또한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181조로 구성된 이 헌법 속에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제113조【국어선택의 자유】

제국내에 있어서 외국어를 국어로 하는 민족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그 자유스러운 민족적 발달이 저해되지 아니하며 특히 교육에 관하여 또한 내정 및 사법에 관하여 모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방해되는 일이 없다.

제118조【언론 출판의 자유】

- ① 모든 독일인은 일반법률의 제한내에서 언어, 문서, 출판, 도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및 고용의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해하지 못한다.
- ② 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단 활동사진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풍속을 해하는 저작물의 취재와 공개의 관람물 및 여행에 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도 또한 법률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술, 학술의 자유】

예술, 학술 및 그 교수는 자유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그 조성에 참여한다

제150조【미술, 천연기념물과 명승풍경의 보호】

- ① 미술, 역사 및 자연의 기념물과 명승풍경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② 독일의 미술상의 소장품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제국의 사무로 한다

이상의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적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드러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국가가 보호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3. 세계인권 선언에서 비롯된 문화적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남긴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수많은 소중한 생명이 참혹하게 죽은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우기 위한 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결의문이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는 권위를 가진다. 세계인권 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권 조약들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선언의 내용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언의 내용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30조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 중 27조에서 다음과 같은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된 문화적 권리는 다른 영역의 권리에 비해 어느 국가에서나 더 이상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선언하고 이를 국가가 이행하도록 했다. 이 조약은 1966년 12월 16일에 개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세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 제21회 총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하여 국가가 이 규약에 조인하여 참여하게 한 것이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이중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항은 제15조에 있다.

제15조【文化·著作權等】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위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한 문화적 권리의 내용과 비교해볼 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세계인권 선언>에서 제시한 문화적 권리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실천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는 이 규약에 17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1990년에야 가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도 각 국가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잘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1986년 6월에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림부르흐 회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림부르흐 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서 핵심이 된 사항은 문제의 규약에 대한 국가의 책임 성격과 범위 문제였다. 이 원칙을 살펴보면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경제발전의 수준에 관계없이 목록에 든 권리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수단들(법률적·행정적·사법적·경제적·사회적·교육적 조치들을 포함한)을 동원하여 조치를 취하는 일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일부 의무조항은 차별금지와 같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을 요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국가는 의무수행 노력을 무기한 연기하는 기회로 본 규약을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가가 이들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결정할 때는 이들 권리를 위해 가용자원들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이다.

이 원칙대로라면 우리 정부 역시 규약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문화적 권리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를 취해야 했다. 즉 이런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내의 인권을 신장하려는 개인과 단체, 시민 사회와 정부기관들이 함께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 신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4.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과 문화적 권리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은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제3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 선언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처음으로 제기되어, 2년 동안 전문가 그룹 회의, 회원국 설문 조사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각국의 관심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선언은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문화정책에 관한 세계 회의와 1998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 회의, 그리고 1995년 세계문화발전 위원회에서 펴낸 보고서인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등 그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세계 인권 선언>과 1966년에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처럼 국제적으로 공인된 여타의 법률 문서에서 선언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서약하면서, 유네스코 헌장 전문에서 '폭넓은 문화 보급과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인간성 교육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조건이고, 모든 국가가 상호 부조와 공동 이익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고 단언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또한 여타의 목적보다도 특히 유네스코에게 부여된 임무, 즉 '문자와 이미지를 이용해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산되도록 촉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국제 협약'을 권고한다는 유네스코 헌장 제1조를 상기하면서,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에서 문화적 권리의 행사와 문화 다양성에 관한 조항을 참조하면서, 문화는 사회나 특정한 사회 집단이 독특하게 지닌 정신적 특성과 물질적 특성과 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이 담겨 있는 집합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문화는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공동생활 방식, 가치 체계, 전통, 신념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문화가 정체성, 사회적 통합, 지식 기반 경제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쟁점 중에서 핵심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서로 믿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문화 다양성과 관용과 대화와 협력을 존중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보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단언하면서, 문화 다양성이 인정되고, 인류 화합이 존중되고, 상호간의 문화 교류가 발전되는 기반 위에서 한층 강력한 단결이 이루어지길 염원하면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세계화 과정이 한편으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와 문명 사이에 새로운 교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국제 연합체제 내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특수한 임무, 즉 문화 다양성을 결실 있게 보존하고 강화해야 할 임무를 자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공표하면서, 이 선언을 채택한다.

이 선언 중 문화다양성과 권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문화 다양성의 담보로서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행위는 도덕상의 의무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특히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의미한다. 누구라도 문화 다양성을 구실로 삼아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서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서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띤다. 창조적 다양성이 활성화되려면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13조와 제15조에 명문화된 문화적 권리가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와 특히 자신의 모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작품을 창작해서 배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질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스스로가 선택한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누구나 문화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문자와 이미지를 이용해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산되도록 보장됨과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유롭게 표현되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중 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하여 예술과 과학 기술적 지식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표현 수단과 유통 수단에 접근할 권리를 모든 문화에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이 지닌 “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서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띤다”는 이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각국에서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른 차원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5. 국내에서의 문화적 권리 인식

1) 국내의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 변화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독립기념관법, 저작권법,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학진흥법(2016, 2, 3 제정, 2016년 8,4 시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2016, 2, 3, 2016, 8, 4 시행) 등이 있다. 이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법률이 넓은 의미의 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는 하지만,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1971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²⁾이다.

사실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기 전에 하나의 문화정책으로 실현된 것이 1965년에 제정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지방문화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미흡했다.

1968년에는 정부산하에, 1961년에 설치한 공보부에 문화업무를 통합하여 문화공보부를 설치하였고, 1972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예진흥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1981년에는 제5공화국 헌법에 문화진흥조항을 명시하였다. 이로 인해 1982년에는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문민정부의 출범 이래로 문화분야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1990년에 정부 부처에 문화부가 설치되었으며, 1993년에는 문화체육부로 통합되고, 신한국문화창달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³⁾. 1998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신설된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의 흐름과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의 문화 정책은 체제유지 및 통제관리 수단으로 문화가 전락해 있었으며, 검열로서의 문화정책이 존재했다⁴⁾. 그리고 문민정부로 넘어오면서, 국민의 문화향수에

2) 제정 당시 문화예술진흥법의 개괄적인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 지급이나 시상제도를 등을 통하여 그 진흥을 적극 추진, 권장하도록 한 것과, 둘째,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중요 시책의 심의기구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과 셋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체로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기금을 설치·운영하게 한 것 등이다. 이 법 이전에 1952년 정치파동기인 피난지 부산에서 ‘문화보호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이 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주로 학술원과 예술원을 위한 법이었고, 절차상 문제도 많았다.

서순복,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분석과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방향」, 『문화정책논총』18, 2007, p,70

3) 문옥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정신문화연구』, 18(2), 1995, p.133.참조

4)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함께 추진되어온 주요 문화정책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에 일제로부터 광복하였으나,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문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정책이나 행정은 존재하지 않고 미군정 학무국 문화과에서 예술 및 종교를 담당하였고, 지역에서는 각 시도 학무국 사회교육과 문화재보담당이 있는 정도였다. 문화 관련 법령으로는 출판등록제(1945)가 있었고, 영화의 검열(미군정청법령)이 시

작되었다.

미군정 문화 정책에서 눈여겨볼 것은 대중문화 교육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문화원이 1947년 6월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미국문화원은 전주, 부산, 대구, 인천, 청주, 대전, 원주, 광주 등 거점 도시에 공보원 지부를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군정의 효율적 홍보와 교육을 위한 것으로, 광복 이후에 별다른 볼거리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무료 영화 관람, 전문 도서 무료 열람 등으로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특히 미국 대중문화의 오락적 기능에 주목할 수 있게 해 준 공간이었다. 하지만 1954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미국문화원은 폐쇄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와 영화 검열 및 단행본 출간을 담당하는 공보처로 분담되어 문화 정책이 수립되었고, 1955년 문화 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공보실에서 선전 영화만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 당시 문화 정책은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의 여파로 주로 반공 의식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49년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조선(조선미술전람회)이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50년 국립국악원 및 국립극장을 개편하였으며, 문화보호법(1952)과 저작권법(1957)을 제정하고, 정전 이후에 영화 면세 조치와 영화입장세법을 개정하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출범한 제3공화국부터는 다시 공보부를 발족하여 영화, 연극, 무용, 음악, 연예, 정기간행물,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영화제작소 등 동적 예술을 담당하게 하고, 문교부는 문학, 미술, 문화재, 단행본, 박물관, 종교를 담당하는 이원화로 복귀하였다. 공보부가 지도 관리의 필요성으로 문화예술 10개 단위 협회의 통합 체계로 1962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를 출범시켰다.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영화법,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음반에 관한 법률, 영화법(1963년 수입쿼터제와 1966년 스크린쿼터제) 등 문화 관련법이 대거 제정되었고 전통문화 전승 사업을 벌였으며 문화재보수5개년 계획을 수립(1954)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상, 지방문화제 등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문화재 애호 운동, 독서 운동 등 각종 계몽 사업을 실시하였고,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을 유치하거나 참여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1969), 중앙국립극장(남산, 1973) 등의 문화 시설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의 문화 정책은 공보 중심의 문화 정책으로 문화예산에서 공보 예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문화예술의 규제와 통제에 치중하여 음반, 영화 등의 사전 검열이 시작되었다. 반면 입법을 통한 문화 행정으로 문화 정책의 기본적인 법체계를 확립한 시기였다.

유신(維新)헌법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제4공화국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를 기치로 올바른 민족사관의 정립, 새로운 민족예술의 창조,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 문화 한국의 국위 선양을 정책 목표로 수립하고 자주적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유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72년 문화예술 정책의 뼈대이자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의 달(10월)이 시작되었으며, 1973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문화의 날(10월 20일) 행사 시작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및 위원회 신설, 문예활동과 문예진흥원 면세 및 기부금 조세 감면 조치, 문화발전 종합 계획인 문예진흥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문화 통제정책 시기로 방송 금지곡과 건전가요, 영화 대본 사전 검열 및 완성 영화 사후 검열(일명 '가위질'), 정권 선전 영화 제작 영화사에 외화 수입권 배당을 유리하게 하는 등 사전심의와 검열, 그리고 선별적 지원이라는 문화예술 활동의 철저한 국가 통제가 이루어졌다. 민족사관 정립에 문화예산의 상당한 비중이 집중되면서 전체 예산 중 문화 예산 비중이 증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10·26사태와 12·12군사쿠데타를 거쳐 시작된 제5공화국은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민주주의의 구현, 문화 창조 능력의 활성화, 문화의 국제화, 문화의 국가 발전 동력화 등을 내세웠다. 문화의 법적 지위 향상과 문화적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조하여 헌법을 통해 문화향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독립기념관, 국립음악당 건립 및 5대궁 개보수 등 문화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문화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문화적 민주주의와 지방 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문화 소비 계층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문화예산 비중이 크게 증가(1981년 0.18%→1987년 0.3%)하였고, 문화예술 예산이 문화재 예산보다 많아졌다. 또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에 문화 부문을 포함하여 문화를 국가 발전 전략 차원으로 위상을 격상시켰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시작 단계에 문화 부문을 포함하였다. 그 외에도 규제를 완화한 공연법 개정(1982),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의 권장 사항 도입(1982), 문화 발전 장기 정책 구상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관광문화산업을 문화정책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는, 문화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1% 시대가 열렸고, 본격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참여정부는 『창의한국』을 통해 문화정책의 기본정신은 '자율, 참여, 분권'을 기초로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원주의, 문화제도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제시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으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높였다. 이로 통해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면서, 문민정부에서 눈뚫던 문화산업의 육성도 강력히 추진되었다⁵⁾.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이후 약 9개월만인 2008년 9월에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발표했다. 4대 목표와 함께 제시된 추진방향은 이후 이명박 정부의 핵심 문화정책이 되었다. 주요한 추진전략은 ①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②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③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④소통과 개방의 전략, ⑤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⑥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으로 나타난다⁶⁾. 이러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 5년간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이 특별한

발표(1984년), 등록 제도 완화와 사전심의제를 도입한 영화법 개정(1984), 박물관법 제정(1985), 외화수입쿼터제 폐지와 외국 영화 직배 허용(1986), 사전심의제 폐지(1986) 등이 있었다.

이전의 창작자 중심 문화 정책에서 소비자까지 확대한 문화 정책으로 문화 민주화를 내세웠으나, 실제 대중의 우민화를 통해 대중의 정치적 자기 소외,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포츠(Sports), 영화(Screen), 섹스(Sex)라는 3S정책을 시행한 시기다. 이 정책은 지배자의 대중 조작 정책으로 일제 강점기 순치 정책의 한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6·10민주항쟁과 직선제(直選制) 개헌을 통해 시작된 제6공화국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을 가치로 복지문화, 화합문화, 민족문화, 개방문화, 통일문화의 문화 복지국가 구현의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고, 핵심 정책 과제로 국민의 문화 향수 확대, 문화 매개 기능의 확충, 창조력의 제고, 국제 문화 교류의 증진을 내세웠으며,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1999)을 발표(1990)하였다.

이는 문화 정책의 중심이 수요자인 국민의 문화 향수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완전 전환함을 의미하였다. 문화 정책 기능을 신설(1989)하고, 장관 서열 7위의 문화부를 신설(1990)하였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이동문화사업, 문화가족운동, 예술의 해 지정,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문화달력,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사랑방 운동 등을 개최하고, 문화향수권 신장의 대표적 사업으로 공연예술 작품 관람 시 관람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랑티켓사업(1991)을 시작하였으며, 그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과 공산권 국가 및 남북 문화 교류 추진,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도서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정(1991)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1994)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문화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문화의 생활화를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문화 전략으로 '문화주의'를 채택하였으며, 그전의 관리, 통제, 규제 중심의 문화 정책에서 벗어나 참여, 진흥, 조장에 문화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김정수, 『문화행정론』, 집문당, 2010. <제4부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중 <제12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 (I): 제1공화국-제6공화국>, <제13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 (II): 문민정부-참여정부>, <제14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변화 추세> 등 참조

5) 원도연,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의미와 차기 정부의 과제」, 『경제와 사회』, 2008, pp162-163

6) 원도연, 「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 제32호, p.228

정책이슈를 생산하지 못한 채 부진한 반면 지방정부나 민간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화정책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결과적으로 문화향유권의 확대로 나타났다. 문화산업의 측면에서도 가장 크게 약진한 것이 한류산업⁷⁾이었다.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의 세계진출은 한국의 문화산업에 커다란 자극요인이 되었다⁸⁾.

이러한 변화는 이후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에서도 강화되었다. 2013년 10월 발표된 문화융성위원회의 보고에서, 문화가 있는 삶의 정책이 제안되었고, 그 내용은 인문가치의 정립, 전통문화의 생활화, 생활 속 문화확산,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예술계 자율적 창작 생태계 조성, 문화융합모델 발굴,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아리랑의 재해석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제안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정한 문화정책의 비전은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이다. 여기에는 문화, 행복, 경제, 통합, 국격의 5가지 키워드가 있고,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가 문화정책의 기조로 제시되었다⁹⁾.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고, 문화관련 법안들을 다수 제정하면서, 문화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문화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문화융성 4대 법안이 시행되고,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10년 이상 끌어오던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서

7)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류는 '날조, 표절, 위장' 등으로 포장된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若杉大2012). 또 한국은 "일본의 문화, 기술, 역사를 왜 탐내는가? 모방된 서브컬처에 지나지 않고 모방한 로봇 애니메이션 대국"에 지나고 않는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모방·열화 복사된 한국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대중문화의 규제나 문화적 토양이 없는 것이 최대의 무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K-POP 프로모션V는 실제로 일본에 국한되어 J-POP 시장을 겨냥한 모방상표이며 멜로디의 일부도 모방했다고 한다. 한국은 "문화 도둑, 날조를 세계로 발신하는데 茶道(차도), 종이접기, 보자기 등은 일본문화의 한국문화로의 이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우선 현지인들의 한류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사례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현지 적응화 전략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콘텐츠 산업 자체 및 연관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자료의 추론과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량기법의 개발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류산업과 쿨저팬 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명확한 결과도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문화는 그 자체가 역사와 장소에 따라 이질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비교분석모델이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및 북남미 등 각 문화권의 한류콘텐츠의 현지 적응화 모델로 발전되도록 다양하고 입체적인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박동렬, 「일본의 외래문화 유입요인으로 분석한 한류산업의 형성과 발전 연구」, 『문화산업연구』 13(2), 2013, pp.7-9 참조

8) 원도연, 위의 논문, p.239.

9) 원도연, 위의 논문, 같은 면

국내적으로는 각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한 점은, 법 자체에 보완 되어야 할 점은 많지만, 선언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문제는 법의 취지를 구체화 할 여건과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2004년에 만든 『창의한국』에 이어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국가문화정책의 계획을 담고 있다.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란 가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과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개인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관광 및 문화산업 종사자,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다양성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차별 하지 않고 존중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힘을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 인종, 종교만이 아니라 세대, 성, 성차, 장애, 지역을 아우르고, 나아가 예술의 크고 작은 집단들이 서로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성은 단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역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 노동, 복지, 도시재생, 환경, 통일 분야에서 문화가 사회 발전과 혁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가치이자 동력이다.

이러한 문화의 3대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란 3대 방향을 설정했다. 3대 방향은 각각 3개의 실천 의제들을 포함한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에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확대', '성평등 문화의 실현'이란 의제가,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이란 의제가, 그리고 '사회의 창의성 확산'에는 '문화자원의 융합역량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란 의제가 담겨 있다. 9개의 의제 안에는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많은 실천과제들이 담겨 있다. 『문화비전2030』은 3대 가치, 3대 방향, 9대 의제를 기본 골격으로 47개의 대표과제와 186개의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2030년까지 국가 문화비전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문화비전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보고서는 실행조직 구성과 민간과의 협치 방안, 법, 제도 개선 및 재원조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화비전2030』은 『창의한국』에서 얼마나 진전했느냐 하는 점에서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2)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문화헌장 제정

(1) 참여정부 시절 문화헌장 제정과 발표

'문화도 기본권' 문화헌장 10월 제정

지금까지 문화는 필수라기보다는 사치로 인식돼 왔다. 이는 '여유'보다는 '근면'을 미덕으로 삼아온 생활습관 탓이기도 하지만 앞만 보고 살아오도록 강요한 권력 탓이기도 하다. 문화보다는 자유와 평등, 정치참여 등을 얻어내는 데 힘써야 했고, 한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 왔다.

그러나 문화적 권리는 인권개념이 확장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중요한 인권항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과 같이 '문화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광화문 흥국생명 4층 회의실에서는 '문화헌장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관광부 문화헌장 제정위원회(위원장 도정일)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문화헌장(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문화헌장은 '문화'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다.

◆ 문화권, 무엇을 말하나 = 공청회 발제문에 따르면 문화권은 '문화 역시 인간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본 권리'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같은 내용을 처음 제시한 것은 유네스코다. 2001년 11월 파리에서 조인된 '문화다양성 선언'을 통해 유네스코는 인류의 존재에 대한 탐구가 문화다양성이라는 의제를 생산했고, 문화권이 문화다양성을 가능케 하는 원리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공청회에서 문화헌장제정위원회가 발표한 문화헌장(안)은 문화적 권리가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중요한 인권 항목으로 인정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 문화적 표현과 향수권 신장에 필요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생존권 △문화적 연대권 △문화 정체성 및 다양성 △문화 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교육에 대한 권리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정책참여와 평가의 권리 △문화분권의 원칙 등 시민차원의 권리와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헌장제정위원인 김승환 충북대 교수는 "문화권은 국가를 문화적으로 재구조화자는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성장발전 제일주의나 전쟁 및 분단과 같은 거대서사에 가려 있던 문화를 인간생존의 전면에 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정치, 경제, 군사 등 대서사의 폭력성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기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됐고,

그 폭발 지점에서 문화적 저항권이 행사됐다는 얘기가.

그는 또 "다른 국가에서 소홀한 문화권과 문화현장이 한국에서 시급한 의제가 된 것은 한국이 분단과 성장이라는 거대담론에 눌러 문화적으로는 불평등과 후진성을 벗지 못해 왔다는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며 "프랑스나 스위스 등 문화선진국에서 문화권을 의제화 하고 문화현장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 문화현장, 참여정부 문화 정책의 기본 = 정부도 문화적 권리가 중요한 인권항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미 1972년 '문예진흥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과 국민의 의무 확인에만 치우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와 구별되는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문화가 소중한 가치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화현장 제정 필요성이 문화 관련 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초 이창동 전 문화부장관은 문화향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현장을 제정·선포하고 2007년께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제도 시행과 각종 공공개발 때 개인의 문화적 충격과 공동체 문화의 파괴를 최소화할 후 있도록 미리 문화적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어떻게 추진되나 = 정부와 문화현장제정위원회는 '문화의 날'인 오는 10월 셋째주 토요일에 대통령 메시지로 '문화현장'을 선포할 방침이다. 문화현장이 제정되면 문화현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곧바로 '문화기본법' 제정 절차에 들어간다. 문화기본법은 모든 문화 예술 정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개별법의 상위법. 정부는 문화기본법을 토대로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정책·사업을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현장은 문화기본법의 '전문'의 성격을 갖게 된다"며 "문화현장과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 문화예술 진흥·산업·보존 등 각종 개별법과 함께 참여정부 문화 정책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화현장 전문 초안

문화는 민족의 유구한 삶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토양이며 공동체의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공감의 바탕이고 사회의 다원적 가치들을 지켜내는 보루이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과 행동을 안내하고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무형의 모태이다.

문화는 우리 사회가 성찰과 희망,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하는 창조적 동력의 원천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 다양한 활동들이 자유롭게 전개되어야 할 터전이다.

우리는 보존과 변화의 역동성 위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열린 사회의 문화를 일구어 국민 모두가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이 헌장을 제정한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내일신문. 2005.06.22)

문화헌장 제정과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원장 송재호)은 19일 오후 1시30분 장충동 우리함께회관 2층 만해NGO교육센터에서 '문화헌장 제정과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2004년 이후 세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올해 1월 확정된 '문화헌장' 최종안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날 노명우 아주대 교수, 도정일 문화헌장 제정위원장, 지금중 문화연대 사무총장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기봉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세훈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남송우 부경대 교수, 박인배 민예총 기획실장, 윤용중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이성원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이수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대표, 허권 유네스코 문화팀장, 홍윤기 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

문화헌장 제정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5월21일 문화헌장 공표식을 가진다. 이어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문화헌장실천시민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문화헌장 정신의 사회적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헌장에는 문화적 권리는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평등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정천기 기자 서울=연합뉴스. 2006.04.17)

“문화적 권리도 시민의 권리” 문화헌장 공표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문화적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문화헌장’이 공표됐다. 문화헌장제정위원회(위원장 도정일 경희대 교수)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헌장 공표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위원장은 헌장 낭독을 통해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로 사회 공동체는 삶의 토대가 될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전문 및 13개항으로 구성된 문화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문화적 원칙과 가치를 천명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다. (조운찬기자 경향신문. 2006.05.21.)

문화헌장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람의 사회를 열게 하며,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모든 이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보존할 것을 보존하고 바꿀 것을 바꾸며 성찰과 희망을 버무려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게 하는 것이 문화의 역동성이다. 우리가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이어받고 변화의 시대적 요청들을 슬기롭게 수용하며 미래를 향한 열린사회, 정의로운 사회, 아름답고 넉넉한 사회를 만들어 갈 창조적 동력은 문화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다 같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들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초석이 될 문화적 가치들을 찾아내며 사회 발전의 문화적 원칙들을 천명하고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다지고자 2006년 5월 이 헌장을 공표한다.

1. **(기본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부당한 검열, 감시,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권리, 이 땅 어디에서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2.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 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 정보와 전달 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 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 정책에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사회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삶의 토대가 될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을 늘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
 - (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에는 사람과 생명의 존엄, 평화와 관용,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연대, 자연과의 상생이 포함된다.
 - (나) 아름답고 선한 것의 존중, 공적 가치의 옹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의 공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같은 문화적 능력도 공동체를 묶어 줄 시민적 덕목의 원천이고 상호 신뢰, 협력, 유대의 기초이다.

4. **(다양성의 원칙)** 문화 다양성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과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는다. 시민은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세계의 문화 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5.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도 뒤처지거나 억눌리는 일 없이 자유롭게 평등하며 창조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평화, 정의, 상호 존중, 이해, 나눔의 정신을 가진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은 그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의 촉진,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개인적 발전을 기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 (다) 불우한 환경의 여성, 노약자, 고아, 독거노인, 혼혈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경제적 소외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삶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문화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 (라) 외국인, 이주민,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언어적, 민족적 소수자와 소수 집단은 이 땅 어디에서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마)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문화적 종교적 소수자와 소수집단은 자기 의사에 반하는 문화 정체성을 강요받지 않는다.

6.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 민족의 경험과 염원이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 유적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의 공유 자산이고 민족적 정체성의 바탕이며, 훼손할 수 없는 인류 문화유산의 일부이다. 전통문화유산과 역사 유적은 온전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고 민족적 창조적 업적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든 이에 개방되어 새로운 문화 창조와 문화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연유산과 고유의 생태적 요소들도 넓은 의미의 문화유산에 포함된다.

7. (지역 문화 창달의 원천) 지역 문화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력의 원천이며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이다. 지역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 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역 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 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 자원들을 보존하고 문화 발전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예술과 학문의 자유 원칙) 예술과 학문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며 사회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발전의 토대이다. 시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예술

창작과 학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가 이룩한 창조적 성과는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예술과 학문은 과도한 상업주의와 이념적 독선의 폐해로부터 보호되고 표현, 사상, 탐구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시민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과 응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9.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 민주 사회를 튼튼히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칙, 제도, 가치를 존중하고 함양하는 문화적 토양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유, 평등, 정의, 자율 및 연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힘써 다져나가야 하며, 주요 국가 정책에서 민주주의 문화의 기초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10. (경제 발전의 문화적 목표) 문화는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임과 동시에 경제 발전의 궁극적 목표이다. 경제 발전과 번영은 언제나 인간답고 품위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그 목표로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얻어내어야 한다.

11. (문화산업의 균형 원칙) 문화산업은 산업적 활동임과 동시에 시민의 정신 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활동이다. 문화산업은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시민의 문화 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신적 발전을 도우며 문화의 국제 교류를 통해 나라와 나라, 국민과 국민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이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문화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시장 경쟁력의 열세에 놓인 문화산업 분야들이나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예외적 분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12. (국가의 책무)

(가) 문화 권리 보장의 책무 : 국가는 이 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을 비롯한 공공의 문화 기반시설들을 부단히 확충하고 봉사체제를 강화하여 문화의 공공성과 문화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활동 공간을 문화의 관점에서 개선하며 법률과 제도에도 늘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나) 문화 활동 지원의 책무 : 시민의 문화적 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시민적 역량의 기초이며 행복한 삶의 토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개개인과 민간 단체들이 전개하고자 하는 교육, 자기계발, 창작 등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지역 간 문화 발전의 격차를 힘써 줄여나가야 한다.

(다) 재휴 협력의 원칙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시민의 문화적 삶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는 민간단체들과의 제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3. (실행의 약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구체적이고 유효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영역도 이 헌장이 천명하는 문화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2) 충청북도 문화헌장

충북도 '문화헌장' 조례 제정 시동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선진도(道)' 구현에 나선 충청북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헌장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는 25일 이종배 행정부지사, 장남수 충북예총 회장, 김승환(충북대 교수) 충북문화예술연구소장 등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문화헌장 제정위원회'를 열어 문화헌장에 담길 내용 및 문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형식적인 문구가 아닌 도민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문화헌장에 넣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장은 문화적 권리는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 권리이자 평등한 권리라는 명제하에 다양성의 원칙, 소외층의 문화권 보호, 문화유산보전 원칙, 경제발전의 문화적 목표, 문화산업의 균형 원칙 등을 전문과 본문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문화헌장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오는 9월 중 조례로 제정해 10월 문화의 달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문화헌장을 만드는 것은 충북이 전국 최초"라며 "조례로

명문화되기 때문에 법률적 실효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앞서가는 충북 문화상 정립 ▲창조문화 동력 확보 ▲신명나는 문예활동 진작 ▲품격있는 문화가치 창조 ▲나눔과 소통의 문화조성 등 문화선진도 구현을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jcpark@yna.co.kr 2008.06.25.)

충청북도 문화헌장

The Chungcheongbukdo Culture Charter

맑은 바람 백두대간으로 흘러내리고 서편에 해가 지면 동편에 밝은 달이 솟는다. 청풍명월(淸風明月)로 문화를 닦고 흥과 신명으로 예술을 가꾼 여기는 대한의 중앙, 충청북도다. 예로부터 온유하면서도 강직했던 충북인들은 유달리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여 중원문화를 꽃피웠다.

홍익인간의 사상과 하늘의 은혜로 세상이 열린 후 선사와 고대를 지나 삼국 시대에 충북은 융합소통의 중심지였다.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충북인들의 온화한 품성과 형형한 기백은 한국문명의 빛이 되었다. 충북문화에는 중용과 합리의 보편성과 올곧은 선비정신이 담겨 있으며 우륵과 난계의 예술혼이 빛나고 직지(直指)의 창의성과 의병, 동학, 3.1운동 사상이 녹아 있다.

목련과 모란이 어울려 아름다운 것과 같이 모든 국가와 민족의 다양한 문화는 소중하다. 충북인들은 나눔과 배려를 바탕으로 번영과 평화를 이루고 차별과 소외를 없애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을 희망한다.

이제 충북인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살리면서 한국문화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이다. 선진 문화를 소망하는 충북인들은 문화헌장을 하늘북 삼아 성숙한 문화사회로 나아가며 통일한국이 문화국가가 되고 지구촌이 문화세계를 이루는 여정을 시작한다.

1. (창조적 참여) 도민은 다양한 문화적 실천행위에 창조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2. (문화민주주의) 도민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유익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창작 주체이다.

3. (표현의 자유) 도민은 지식과 정보, 예술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4. (문화소외) 문화소외자는 정체성과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과 지지를 받으며 주류적 가치와 관습, 특정한 태도 등을 강요받지 않는다.
5. (미디어 접근권) 도민은 새롭고 다양한 미디어를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6. (문화다양성) 도민은 국내·외 지역문화가 충북문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이해하며 가치를 공유한다.
7. (충북문화 계승) 충청북도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
8. (문화예술진흥) 충청북도 및 시·군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을 지원한다.
9. (공·사적 의무) 충청북도내 공공기관과 단체 및 기업, 도민은 문화적, 정서적 풍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0. (문화산업) 문화산업은 콘텐츠의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11. (문화정책) 충청북도, 시·군 및 관련 기관의 문화정책은 우선되어야 하며 도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3)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문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임을 선포하는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문'이 발표된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도서관에서 박원순 시장과 김정현 문화·예술 명예시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언은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권 및 문화다양성을 보장하는 '문화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권리와 서울시의 의무를 총 4장 17개 조문으로 구성한 것이다.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전문으로 시작하며, 제1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통해 "시민은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 계층·연령·지역·성차·인종·종교·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시와 전문가, 지역문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문화권선언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시민 논의와 제안을 통해 선언문을 준비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통해 밝힌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를 위한 시와 시민의 약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장 (2002,

바르셀로나) 등 문화권과 관련한 국제규약이나 앞서 문화권 선언을 발표한 세계 도시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성도 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선언식에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운영 등 5대 과제를 약속한다. 또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은 서울에서는 검열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부패한 문화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투명하고 자율적인 문화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서울 전체의 약속"임을 밝힌다.

서울시는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시민도시위원회'를 구성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는 지방정부 중에서 처음으로 시민 문화권을 선언했다.

이 선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02년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을 선언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은 세계 두 번째 대도시의 선언이라는 점이다. 시민 문화권은 경제민주화 및 정치개혁과 상호 선순환하는 민주주의 시민 역량의 기본축이다.

같은 맥락이지만 서울시의 시민 문화권 선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촛불광장의 향배와 관련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통령선거가 예측되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과제로 공론화된 대표적인 국정기조 중 하나가 강력한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결국 분권에 참여할 시민의 자치 역량에 달려 있다. 시민의 자치 역량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혁에 달려 있지만, 그 양과 질의 성장은 시민의 문화적 역량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시민 문화권을 선언하고 문화권에 대한 시민의 집합적 경험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쌓아갈 법제의 뒷받침과 실행 계획이 중요하다. 서울시가 그 첫발을 내디뎠고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될 것이며 무엇보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지방분권 과제에서도 시민 문화권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다.

국가 사유화와 국정 농단의 밀실에서 특권층의 이권에 불과했던 국가의 문화정책은 바야흐로 서울시의 시민 문화권 선언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권리로 대전환을 해야 할 때다. 아울러 문화, 관광, 체육, 홍보가 붙어 있고 방송통신과 미디어는 분리돼 있는 문화 당국 체계를 수술해 합칠 것은 합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국민의 문화권을 견인할 명실상부한 문화 당국을 재건해야 할 때다.

시민의 문화적 표현, 교육, 접근, 향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 산업과 지역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법질서 집행과 책임을 지는 공직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와 시민의 인식 대전환이 불가피한데 그 출발점에 시민 문화권이 있다.

시민 문화권이 선언을 넘어 제도와 생활에서 내면화되려면 지방분권과 문화자치의 원칙 아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시민 문화권 선언은 실로 엄청난 일이다.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문화일보, 2017년 02월 13일(月))

서울시 시민 문화권 선언

전 문

시민은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문화를 누리는 동시에 창조해 내는 존재입니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와 함께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적 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시민과 서울시는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고, 표현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서울시는 계층이나 연령, 지역, 성차,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민과 서울시는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각종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이고 축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은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1장 서울시민 문화권

제1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시민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예술의 향유에 있어서 계층, 연령, 지역, 성차,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2조 문화에 접근할 권리

시민은 출판, 공연, 영상, 시각예술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모든 콘텐츠와 정보, 이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 시설과 공간에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시민은 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 문화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

시민은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애주기별로 세대와 연령에 적합하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시민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문화 향유자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문화에 관한 표현의 자유

시민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문화예술로 표현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시민은 다른 창작물을 비평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울의 문화환경

제5조 서울의 문화다양성

서울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며, 그 문화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시민과 서울시는 계층, 연령, 지역, 성차, 인종, 종교, 국적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표현을 보장하며, 이러한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조 서울의 문화경관

서울시는 서울의 역사를 형성해 온 오랜 문화경관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시민이 자신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문화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7조 서울의 문화자원

시민과 서울시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과 같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서울시가 보유한 유·무형 문화유산, 전통적·현대적 축제와 거리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활성화하여 도시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8조 서울의 문화공동체

시민은 창작과 향유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고, 서울시는 위와 같은 문화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9조 서울의 문화역량

서울시는 기반시설 확충, 문화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제3장 문화권을 위한 협치

제10조 문화 협치의 가치

시민과 서울시는 서울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민은 스스로 문화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서울시는 문화 협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제11조 문화정책 수립에의 참여

시민은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제12조 문화정책 집행에의 참여

서울시는 시민이 문화정책 집행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재생 사업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3조 평가와 의견수렴

시민과 서울시는 문화정책과 이에 따른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에 영향을 주는 시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시민은 도시의 주인이자 문화예술 정책의 수혜자로서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장 문화권을 위한 시민과 서울시의 의무

제14조 문화권을 위한 시민의 의무

시민은 문화활동의 주체이며, 서울의 문화경관, 문화자원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제15조 공동체 문화를 위한 시민의 의무

시민은 서울에 공존하는 다양한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표현과 의사를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문화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16조 문화권의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의무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권이 침해받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문화기반시설 공급, 문화축제 개최, 문화유산 보존, 문화예술 교육 등 각종 문화정책을 통해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제17조 문화권 원탁회의

시민과 서울시는 문화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원탁회의는 각계각층과 여러 지역의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위원회가 서울시의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4) 인천시민 문화헌장

인천시, 내년 상반기 시민문화헌장·문화도시 조례 제정

인천시가 문화 주권 실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민문화헌장 및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7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에서 내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시민 행복과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 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주권 실현을 위한 주요정책은 시민문화헌장 및 문화도시 조례 제정, 인천문화포럼 등 문화소통 강화, 예술인 복지 및 문화 다양성 증진, 개항문화플랫폼 확대조성 및 활성화 등이다.

시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천문화포럼을 통해 시민문화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헌장에는 각종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인천문화포럼의 안정적 운영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도시 조례도 내년 상반기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인천형 예술인 복지모델을 수립하는 등 예술인 복지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뮤직플랫폼 기반 조성을 위한 인천음악관 운영 등 개항문화플랫폼을 확대·활성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문화헌장은 문화 주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정하겠다"며 "제정될 헌장은 각종 문화 정책 및 사업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김민 기자)

"문화예술 누리는 건 시민 권리"... 인천시 '문화헌장' 이달말 선포

인천 시민 10명 중 8명은 문화예술을 누리는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문화 권리를 높이기 위해 '시민문화헌장'을 제정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를 담은 '인천시민문화헌장'을 이달 말 선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예술인 단체와 시민단체, 문화재단 관계자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인천시민문화헌장 제정을 추진해왔다.

TF팀이 헌장 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천 시민 5천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문화예술을 누리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4천212명)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을 누리는 것이란 문화 콘텐츠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교육, 창작, 정책 참여, 문화

다양성 보장 등 전반적인 문화 활동을 모두 포함했다.

인천시민문화헌장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의 생활반경에서 가깝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답한 비율이 24%로 가장 많았고, '다양한 계층·상황 등에 대한 차이가 존중되도록 하는 방안'(22%), '시민들의 의견이 지역 문화에 반영되는 개방적 정책 구조'(15%), '인천만의 문화를 발굴·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14%)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그밖에 문화 정책에 관한 건의·의견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문화생활이 부족하다', '문화관련 재단,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기관 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야간에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하게 제시됐다.

TF팀은 이러한 설문 조사 내용을 반영한 '인천시민문화헌장(초안)'을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20일 오후 7시께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초안 전문에는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구성원의 책임과 인천시의 의무가 담겼다. 시는 시민의 문화 향유·교육·창작 권리 등 6가지 문화권을 보장해야 하며, 시민은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 유산을 보전·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헌장은 이달 말 확정해 선포할 계획"이라며 "헌장을 통해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경인일보 (www.kyeongin.com))

인천시민문화헌장(안)

인간은 그 사회의 문화와 함께 성장한다. 문화는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치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 인천은 오랜 역사가 흐르는 동안 아름답고 소중한 문화를 만들어왔다. 인천의 서해는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염원을 담아 출렁였고, 하늘은 세계를 향해 열려 더욱 다양한 문화가 나고 들었다.

인천시민은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더 나은 삶을 위해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문화는 내용과 형식이 넓고 다양하며 그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 너와 나, 이웃과 사회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의 차이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시민문화헌장을 통해 인천의 문화, 그 미래의 계획과 전망을 세우기 위한 소중한 약속을 시작하려 한다. 더 자랑스럽고 행복한 인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드높이는 인천, 그 어떤 제약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인천시민은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이 제약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인천시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 인천시민은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 ◆ 인천시민은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인천시는 시민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한다.
- ◆ 인천시민은 인천시의 문화예술 정책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시민이 문화예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 인천시민과 인천시는 인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그것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한다.

(5) 부산시민 문화헌장 초안

부산시민 문화헌장(안)

문화는 우리 삶의 토대이며, 윤택한 일상의 조건이다. 그래서 문화의 향유는 시민의 필수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

부산은 지형적으로 한반도의 산맥을 따라 강이 흐르고, 강이 끝나면서 바다와 만나 열린 해양세계로 나아가는 곳이다. 근대 이전부터 동북아시아 해양교류의 출발지였고, 한국 근대화의 물꼬를 튼 도시이다. 어느 지역보다 안과 밖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부산문화의 정체성은 한국전쟁 때 바다가 강을 품듯 갈 곳 없는 피란민을 포용하는 힘이 되었다. 또한 금정산의 기세와 가마솔의 열기로 일어난 부마항쟁은 한국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

패총과 고분에서 출토된 찬란한 유물은 부산문화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근대 이후 영화에 대한 시민의 애정과 지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시켰으며, 부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영화창의도시의 영예를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수행했던 조선통신사도 역사적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인류평화의 이념을 드높이 실현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개방과 환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부산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질적 문화들이 창의적으로 소통하는 문화의 교류 지대로 발전해 가야 한다. 그리고 문화분권을 통해 부산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적인 미래상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시민들의 문화주권을 오롯이 확립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문화적 가치들을 존중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2020년 0월 0일에 이 헌장 전문과 14개의 조문을 공표한다.

1. **(시민문화권 보장)**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받아야 한다.

2. **(문화적 토대가 되는 인문정신의 진흥)** 공동체를 지탱하는 문화 가치는 사람과 생명의 존중, 상생과 환대의 정신, 타자에 대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관용, 공공선의 추구, 자연과의 상생이다. 시민공동체의 신뢰, 협력, 유대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할 수 있는 인문정신을 진흥해야 한다.

3. **(문화다양성의 존중)** 문화다양성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토대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초이다. 시민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문화를 창출하며,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평화와 공존의 세계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4.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 문화예술의 창조는 문화 진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의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이 창조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5. **(미래세대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과 환경조성)**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시민 단체, 교육청, 대학, 문화예술인 단체와 소통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은 문화예술교육에 있다. 그러므로 연령이나 지역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인과 이주민도 부산지역에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8. **(문화자산의 보존)** 부산지역 선인들의 경험과 역원이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는 인류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문화자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새로운 창조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부산의 자연환경도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향유해야 할 문화자산이기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해야 한다.
9. **(예술과 학문의 자유)** 예술과 학문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며 지역사회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역량의 토대이다. 시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예술창조와 학문 활동에 참여하고, 사상, 표현, 탐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룩한 창조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10. **(경제발전과 문화의 조화)** 문화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근원적 힘이다. 경제발전과 사회번영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문화 발전의 지속적 동력이 되어야 한다.
11. **(문화산업의 지원과 균형)** 문화산업은 산업활동이자 시민의 정신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화적 활동이다. 문화산업은 시장논리와 문화적 가치 사이의 균형 속에서 시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문화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시장 경쟁력의 열세에 놓여 있는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12. **(문화의 사회적 가치)** 부산은 사회적 고립, 고령화, 도시공동화, 해양환경오염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가 지닌 가치와 정신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화적 힘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13. (부산시의 책무)

1) 문화권리 보장

부산시는 이 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산시는 공공의 문화기반시설을 부단히 확충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체계를 강화하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생활환경과 활동공간을 개선하고, 법률과 제도에도 문화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2) 문화활동과 교육 지원

부산시는 시민과 민간단체가 펼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활동력이 부산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능력의 기초이며, 행복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제휴협치의 원칙

부산시는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환영하고 존중해야 하며,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시민 문화예술단체와 적극적으로 제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문화의 지역편중과 격차 해소

부산시는 부산지역 내에서 문화향유의 기회가 시민들에게 균등하고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지원해야 하고, 지역의 문화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4. (실행의 약속과 평가) 부산시는 이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이의 실행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이 헌장이 천명하는 문화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말문을 닫으며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지난 20년을 풍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권리는 아직 현실적으로 일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주의에 치우친 산업화와 개발은 문화사업과 산업을 증대한 반면 문화공공성과 다양성 후퇴를 초래하여 문화적 빈곤화와 양극화를 낳았다.

문화의 빈곤, 문화의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보인 신자유주의 경제중심의 문화정책을 넘어 문화공공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문화정책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정공법으로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런데 문화헌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권에 기초한 지자체의 문화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며, 생활하는 개인 주체를 둘러싼 학교, 작업장, 지역사회 등 생활문화 권역에 기초한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즉 추상적 주체로서의 국민 일반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인, 노동자, 여성, 이주민 등 구체적 주체의 생활 세계에 기초한 문화적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문화헌장을 만드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제정과 공표가 이러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것이 시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다.

- MEMO -